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57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김도읍・박상웅・우재준

이철규 • 김민전 • 박충권

이종욱 · 김소희 · 권영진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등의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u> | 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중앙상담지원기 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 |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